채무조정 처리 기준 (채무조정안)

주식회사 리움에셋대부 내부 처리 기준 요약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채무조정 요청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합니다.

제2조 (대상)

회사에 대출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으로서 연체가 발생한 고객(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 등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상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요청 방법)

채무조정 요청서와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증빙 서류를 매장 방문·우편·이메일로 제출합니다.

제4조 (처리 기간)

1. 회사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2.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하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처리 기간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5조 (처리 기간 중 조치)

요청 접수 시부터 결과 통지 시까지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을 중지하며, 같은 기간 동안 담보물(질물)의 처분 절차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제6조 (조정 방법)

고객의 소득, 재산, 다른 채무, 연체 사유 등을 종합 심사하여 다음 중 적합한 방법을 정합니다.

- 상환기간 연장
- 분할상환
- 이자율 조정
- 원금·이자 일부 감면
- 그 밖에 고객과 합의한 방법

제7조 (거절 사유)

-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한 경우
- 보유 재산·소득으로 정상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합리적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제8조 (합의 및 이행)

고객이 결정 내용에 동의하면 변경 약정을 체결하며, 고객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제9조 (문의)

010-2060-4845 (평일 10:00–19:00) · info@liumasset.com

※ 이 기준은 법령 개정 및 회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